##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99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김병주·김남국·김민철

오영환 · 이원택 · 임오경

임호선 · 장경태 · 장철민

정청래 • 주철현 • 최혜영

한준호 · 홍성국 의원

(14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 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3조 의2제8항).

법률 제 호

##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의2제8항 중 "입회"를 "참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13조의2(탄약의 폐기) ① ~       | 제13조의2(탄약의 폐기) ① ~ |
| ⑦ (생 략)                  | ⑦ (현행과 같음)         |
| ⑧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        | 8                  |
| 위탁업체에 의한 폐기가 모두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종료될 때까지 관련 군인, 군무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원 또는 공무원이 <u>입회</u> 하여 감 | <u>참관</u>          |
| 독하도록 하는 등 화약류등이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⑨ (생 략)                  | ⑨ (현행과 같음)         |